

주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마 포 구 의 회

주민 구정참여 활성화 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2025. 1.

마포구의회

제 출 문

마포구의회 운영위원장 귀하

「주민 구정참여 활성화 연구회」 활동기간 종료에 따른 『주민 구정참여 활성화 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를 제출합니다.

2025년 1월

주민 구정참여 활성화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요약)

□ 단체개요

- 단체명: 주민 구정참여 활성화 연구회
- 설립목적: 마포구 민·관 협치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활동기간: 2024. 1. 1. ~ 2024. 12. 31.
- 구성원: 총 10명(회장 차해영, 강동오, 고병준, 권인순,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최은하, 홍지광)

□ 주요 연구내용

○ 연구 질문

- 위원회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연구 방법

- 연간 연구 활동 계획 수립 및 회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 활동 시행
- 우수 지자체 탐방 및 사례 분석 후 벤치마킹 포인트 도출
- 전문가 초빙 강의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결과 도출
- 연구 결과물 성과 공유 및 실제 적용

○ 연구 목적

- 위원회 설립 및 운영의 필요성을 행정적 측면, 제도변화 측면에서 검토함
 - ▶ 법·제도, 조직관리 제도
- 마포구 각종 위원회 정비 현황을 조사하고 특성을 분석함
- 마포구 위원회를 정량적·정성적 측면에서 운영을 평가하고 정비 방향을 제시함

○ 연구 결과(내용 요약) - 개선 방향 제시를 위한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 정량적 측면

(현황 1) 마포구의 경우 122개 위원회 중 상설 위원회의 수는 109개로 전체 위원회의 8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과 비교하여 비상설 위원회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남

(현황 2)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위원회의 34.1%(989개)가 의무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정성적 측면

(현황 1) 구정의 중요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법령 및 조례에 위원회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운영되지 않는 경우 있음

(현황 2) 같은 강행 설치 위원회 규정 중 “두어야 한다.” 와 “둔다.” 라고 다르게 표기하여 혼란을 주는 부분이 있음

▶ 위원회 설치 근거와 관련하여 “둔다” 라는 표현이 주는 혼란을 주는 것은 해당 조문이 임의 설치로 규정되거나 미분류, 설치되지 않은 위원회의 설치 근거에도 다수 나타남

- 개선 방향

(방향 1) 통합 및 폐지 기준의 명확화: 적정성 판단 필요

(방향 2) 정책자문위원회의 활성화

(방향 3) 위원회 설치 기준 및 조문 정비

(방향 4)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

□ 주요 추진 일정

일 정	내 용	상 세
2024. 1. 29.	1차 간담회	회의 및 간담회 개최
2024. 7. 19.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1차 연구
2024. 7. 30.	성동구 선진사례 탐방	선진사례 연구: 언더스탠드 에비뉴, 재활용 센터, 재활용 선별장
2024. 8. 13.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1차 연구
2024. 10. 23.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2차 연구
2024. 11. 25.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차 연구

목 차

1	연구회 구성 현황	1
	▶ 구성 근거	1
	▶ 구성 목적	1
	▶ 연구단체 개요	1
2	연구단체 활동	2
	▶ 월별 연구활동	2
	▶ 월별 세부계획	2
	▶ 주요 연구과제	3
3	연구활동 결과	6
	▶ 1차 간담회	4
	▶ 2차 간담회 - 선진사례 탐방	5
	▶ 1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7
	▶ 2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9
4	연구용역 수행	11
	▶ 과업 1 세부 내용	12
	▶ 과업 2 세부 내용	14
	▶ 연구용역 결과 요약	18
붙임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사용 내역	19
	▶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사용 내역서	19

주민 구정참여 활성화 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2024년 마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주민 구정참여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 활동을 마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연구회 구성 현황

구성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3조

구성목적

- 관련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여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연구단체 개요

- 단 체 명: 주민 구정참여 활성화 연구회
- 설립목적: 마포구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 활동기간: 2024. 1. 1. ~ 2024. 12. 31.
- 구 성 원: 총 10명
 - (회장) 차해영, 강동욱, 고병준, 권인순, 신종갑, 안비자, 이현동, 채우진, 최은하, 홍지광

월별 연구활동

구 분	연구활동 내용
2024년 1월	○ 1차 간담회 - 연간 활동 계획 수립
7월	○ 선진사례 지역 탐방 - 성동구 언더스탠드 에비뉴, 재활용 센터, 재활용 선별장 ○ 1차 연구용역 착수(중간보고회 개최)
8월	○ 1차 연구용역 종료(최종보고회 개최)
8월	○ 2차 연구용역 착수(중간보고회 개최)
12월	○ 2차 연구용역 종료(최종보고회 개최)

 월별 세부계획

 정례·수시적인 연구모임 활동

- 목 적 : 연구단체 회원의 연구 활동 지속을 위한 회의 진행
- 시 기 : 월 1회 개최
- 대 상 : 연구단체 회원
- 내 용 :

- 자체토론·논의·간담회 추진
- 우수 지자체 탐방
- 연구 주제 관련 쟁점 정리
-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선 사항 적용 가능성 판단 등 ▶ 마포구 관련 부서에 제도 실현 제안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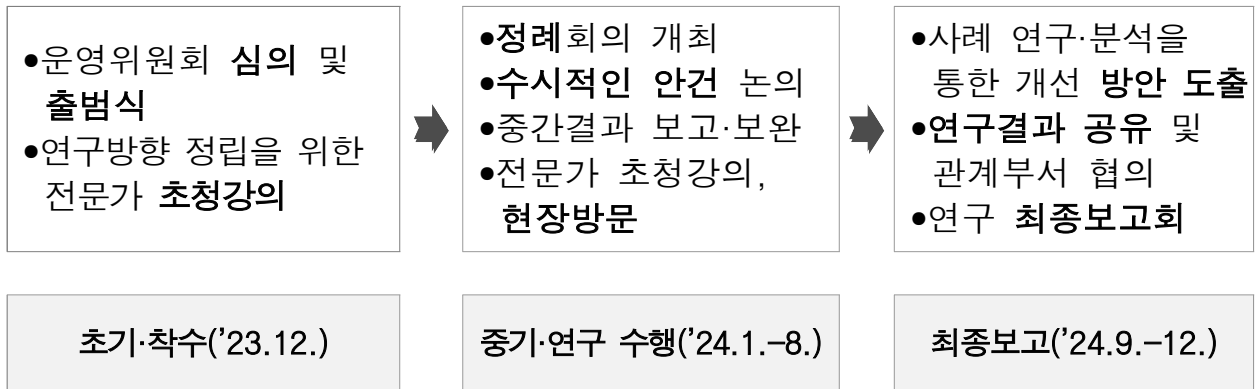
 전문가 강의 및 토론회 추진

- 타 지자체 우수사례 분석, 토론회
 - 기관 유형별로 선정하여 방문·견학

- 연구용역 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 전문가, 연구단체 구성원 간 논의

□ 주요 연구과제

- 연구 질문
 - 각 기관의 운영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각종 위원회 혹은 주민자치 제도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연구 프레임워크
 - 본 연구회는 아래의 프레임워크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예정



□ 1차 간담회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년 1월 29일(일요일), 오전 11:00~13:30
- 마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의회사무국 1층)

- 참석자(13명)

- 차해영(회장), 강동오, 고병준, 권인순,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홍지광
- 연구단체 담당 정책지원관 : 박지성, 장억수, 박건영 등

○ 회의 내용

- 연구 방향성 및 연구주제 설정을 위한 논의

- 상반기 연구대상: 마포구 위원회제도(위원회 중복 여부 및 통폐합 필요성)
- 하반기 연구대상: 주민참여예산 제도

- 향후 일정 관련 논의 등

- 우수 지자체 탐방(주민자치·주민참여 제도 활성화 지역)

- 향후 추진 사항 논의

-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구체화
- 탐방 대상 지자체 검토 등

○ 회의 사진



사진 1



사진 2

□ 2차 간담회 - 선진사례 탐방

○ 개요

- 일시: 2024. 7. 30.(화) 9:30~18:00
- 장소: 성동구 일대
- 강연자 및 인솔자: 황선화(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전문위원 및 前 성동구의원)
- 주제: 성동구 선진사례 연구 등
- 참석자: 연구단체 회원 및 관심 있는 의원, 정책지원팀장 등

○ 강연 내용

- 성동구 스마트 흡연 부스 사례 연구
- 성동구 언더스탠드 에비뉴 사례 연구
- 성동구 재활용 센터 및 재활용 선별장 사례 연구 등
- 주요 탐방 내용 타임라인

연번	시간	장소	일정내용
1	10:40~11:20	성동구청 및 성동구의회 (고산자로 266)	- 성동 책마루, 스마트쉼터, 성동 샘물창고 운영현황 견학 - 성동구 의장, 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
2	11:40~13:10	성수 메이탄(식당) (왕십리로 50, 2층)	- 점심식사 및 간담회
3	13:10~13:20	스마트 흡연부스 (왕십리로 50 인근)	- 스마트 흡연부스 견학 및 우리 구 적용 가능 여부 검토
4	13:30~14:10	언더스탠드 에비뉴 (왕십리로 63)	- 성동구 선진사례 사업 설명 및 언더스탠드에비뉴 추진경위, 사업현황 청취
5	14:25~14:35	성수 아뜰리에길 (성수동1가 2동 일대)	- 성수 아뜰리에길 붉은벽돌마을 견학
6	15:00~15:50	재활용센터 (자동차시장길 49)	- 재활용과 새활용에 대한 개념 이해 - 새활용이 적용된 상품 견학 - 새활용 상품을 제작하는 '꿈꾸는 공장' 견학
7	16:00~17:20	성동구→마포구의회	차량탑승 및 마포구의회 도착

○ 탐방사진



사진 1



사진 2

□ 1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중간보고회》

○ 개 요

- 일시: 2024. 7. 19.(금), 10:00~13:00
- 장소: 마포구의회 회의실(1층)
- 참여대상: 연구단체 소속 의원 10명, 의회사무국 직원, 연구용역 수행업체

○ 주요 내용

- 위원회 관련 행정이론 및 법제도 검토 및 위원회 필요성 논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중앙정부 위원회법 현황 및 정비계획 검토
 - ▶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009년): 불필요한 위원회 발굴 및 우선 폐지,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통폐합 및 통합 운영 등
 - ▶ 위원회 가이드라인: 설치▶구성▶운영 단계별 제시
- 마포구 정비계획 검토 및 분석
 - ▶ 비상설 위원회 비중, 의무 설치 위원회 확인 등

○ 중간보고회 사진



사진 1



사진 2

《최종보고회》

○ 개 요

- 일시: 2024. 8. 13.(금), 10:00~13:00
- 장소: 마포구의회 회의실(1층)
- 참여대상: 연구단체 소속 의원 10명, 의회사무국 직원, 연구용역 수행업체

○ 주요 내용(※중간 보고에서 제출된 의견 중심 논의)

- 위원회 정수 규정과 관련된 내용 검토
 - ▶ “~이내” 구성 규정에 대한 적용 방법 검토
 - ▶ 상한 기준만 명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하한 기준을 규정할 필요
- 법령 및 조례상 “둔다”라는 표현의 명확화 추진 필요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마포구의회의 관리 감독 방안 마련 필요성 시사

○ 최종보고회 사진



사진 1



사진 2

□ 2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중간보고회》

○ 개 요

- 일시: 2024. 10. 23.(수), 14:00~16:00
- 장소: 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3층)
- 참여대상: 연구단체 소속 의원 10명, 의회사무국 직원, 연구용역 수행업체

○ 주요 내용

- 위원회 전수 조사 양식을 구성하여 운영 현황 및 특징을 분석
 - ▶ 소관부서 및 성격, 설치 근거 및 입법형식, 존속 기한(근거), 설치 목적, 주요 기능 등
- 위원회 운영 관리 방안 제시
 - ▶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 관리, 위원회 정비 절차 보완, 위원회 운영 및 관리 매뉴얼 방향 논의
- 각종 위원회 조례의 개정 방향 제시
 - ▶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방향을 반영한 개정 필요
 - ▶ 실무 담당자와 참여 위원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 ▶ 개별 기금 운영기구의 통합을 위한 조례 제안

○ 중간보고회 사진



사진 1



사진 2

《최종보고회》

○ 개 요

- 일시: 2024. 11. 25.(월), 13:00~15:00
- 장소: 마포구의회 회의실(1층)
- 참여대상: 연구단체 소속 의원 10명, 의회사무국 직원, 연구용역 수행업체

○ 주요 내용

- 주요 위원회 운영현황 추가 분석
-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및 운영 매뉴얼(안) 제안

○ 최종보고회 사진



사진 1



사진 2

□ 과업 1)

1. 과업명 : 위원회 유형 분류 및 운영 현황 분석
(마포구 지방위원회 현황분석 연구 1)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3. 과업 예산 : 22,000,000원(금 이천이백만원)
4. 과업의 목적 및 연구 방향
 - 행정의 복잡화로 인한 전문화 경향의 강화와 시민들의 행정 투명성 및 참여욕구의 갈등은 기존 행정집행기관 중심의 행정에서 다양한 시민참여의 방법을 통한 거버넌스의 다양화를 촉진함
 - 행정 과정에 민간의 전문성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갈등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다양한 법령과 조례에 위원회 등의 설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 구조가 행정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구조임을 보여주는 것임
 -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은 2021년 전면개정을 통해서 기존 합의제행정기관의 부분처럼 간주되던 자문기관의 위상을 제130조로 분리하였으며, 시행령을 통해 그 요건과 구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바 있음
 - 하지만 관행적인 위원회의 설치는 오히려 행정 과정의 책임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행정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이와 같은 이유로 새로운 행정비용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함
 - 특히 마포구의 경우에는 서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조례 대비 위원회 규정을 담은 내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거버넌스의 운영에 대한 의지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조례수 상위 10개 자치구 현황(단위: 개수, %)]

자치단체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위원회 규정(A)	전체 조례 중 A 비율
서울특별시 본청	844	246	34	13	506	60.0
노원구	471	116	40	6	217	46.1
도봉구	425	115	36	14	193	45.4
동작구	425	122	28	12	195	45.9
양천구	425	94	43	4	185	43.5
금천구	417	97	32	13	184	44.1
마포구	417	105	30	21	193	46.3
동대문구	416	102	45	16	180	43.3
영등포구	415	111	24	22	194	46.7
구로구	407	105	38	10	184	45.2
강동구	401	121	42	3	184	45.9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자치법령시스템을 통해서 조례의 제목과 내용에 '위원회'규정이 담긴 조례에 대한 조사(검색: 2024년 2월 24일)

- 하지만 실제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많은 위원회가 당초 제정의 취지대로 기능하는 지, 아니면 해당 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거버넌스 도입의 당초 취지가 실질적으로 잘 나타나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 특히 2023년 6월 정부는 '효율적인 조직운동을 통해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이라는 목표 하에 새로운 조직관리 지침을 마련했고, 공무원 정원 1%의 의무감축 및 재배치와 더불어 위원회 중 개최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의 폐지를 명시한 바 있음
- 이는 위원회 정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나, 자칫 개최건수 등과 같이 계량적인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 ① 잘 개최되지 않으나 정비를 통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야 하는 사례 ② 개최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버넌스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와 같이 위원회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간과할 수 있음

- 특히 마포구민의 대의기구인 구의회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위원회 정비에 대해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보장하고 행정 과정에 다양한 민간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
- 이에 현행 마포구에서 운영 중인 지방위원회에 대한 기존의 형식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운영/기능/구성 상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해당 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을 이를 규정한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새로운 현황 분석이 필요함
- 즉 위원회 자체의 계량적인 운영실적에 대해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조례 상 해당 위원회가 과연 불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운영상의 제도적 한계에 의하여 실적이 저조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는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의정 활동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이를 위한 1차 연구로 지방의회가 다양한 관점으로 현행 마포구 내 위원회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5. 과업 범위

- 1)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마포구
- 2) 시간적 범위 : 2019년~2023년(5년 간)
- 3) 내용적 범위 : 마포구 소관 지방위원회
 - (법정위원회)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 4) 과업의 주요 내용
 - 마포구 내 지방위원회 현황 분석(기능 및 역할)
 - 마포구 내 지방위원회 운영실적 및 운영 사례 분석
 - 마포구 내 지방위원회의 정성적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사례
- 5) 연구 방법
 - 법률 및 행정 자료 분석
 - 사례 조사: 기사 및 회의록 등

□ 과업 2)

1. 과업명 : 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

(마포구 지방위원회 현황분석 연구 II)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3. 과업 예산 : 22,000,000원(금 이천이백만원)

4. 과업의 목적 및 연구 방향

○ 중앙정부는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요한 시기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에 대한 방침이 제시되고 중앙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보고 및 평가 과정을 수행하고 있음. 이는 위원회에 대한 운영 정비가 중앙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방침임을 보여주는 것임

- 위원회 정비의 방향은 일차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를 발굴하고 이를 폐지 혹은 통합의 방식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필수 위원회의 경우에는 효율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임

- 하지만 2023년 위원회 정비 실적을 특별교부금 산정액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강제성을 띤 조치로 전환되었음

○ 정부의 위원회 정비 방향의 변화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위원회 등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정책 선호가 낮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 온 위원회 정비의 한계로 인해 자율정비의 효과가 낮은데에 따른 것이기도 함

○ ‘마포구 지방위원회 현황분석 연구’1차 연구를 통해서 확인 바에 따르면 마포구의 위원회 정비는 1) 위원회 관리 데이터의 비체계성 2) 기존 정비 방식의 타당성 3) 위원회 등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한계 등이 나타났음

- 우선 위원회의 숫자와 관련해 마포구가 서울시에 보고한 자료에 의한 위원회 수는 122개이지만 자체 조례에 따라 마포구 행정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위원회는 129개 반면 구의회에 제출한 위원회 수는 132개 마지막으로 조례나 규칙 상 위원회 규정이 있는 사례는 20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개별 위원회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

성을 보여주는 것임

- 2019년부터 활성화 대상 위원회로 분류하여 관리해온 주요 위원회의 경우에는 활성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

위원회명	회의개최 횟수								
	2021년			2022년			2023년		
	계	서면	대면	계	서면	대면	계	서면	대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4	0	4	7	7	0	6	5	1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1	1	0	0	0	0	0	0	0
교육발전자문위원회	0	0	0	0	0	0	0	0	0
지명위원회	1	1	0	1	1	0	0	0	0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0	0	0	0	0	0	1	1	0

*마포구의회(2024), 위원회 유형 분류 및 운영 현황 분석.

○ 특히 위원회 정비와 관련한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폐지와 통합 중심의 정비 방침을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폐지 기준과 통합의 방향에 대한 일관성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법제처의 경우에는 법정 위원회와 조례상 위원회 간의 통합 가능 여부에 따라 4가지의 유형을 구분하고있지만, 마포구의 정비 현황을 보면 법정위원회를 임의로 폐지하거나 명확한 조례의 정비 없이 법정 위원회를 법정위원회와 통합하는 사례가 발견됨
- 이는 위원회 정비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위원회 통합운영의 적절성]

유형	적합 여부
유형1: 법령으로 설치된 위원회(A)가 법령으로 설치된 위원회(B)의 기능을 통합수행하도록 조례로 규정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
유형2: 법령으로 설치된 위원회(A)가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B)의 기능을 통합수행하도록 조례로 규정	가능
유형3: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A)가 법령으로 설치된	불가능

위원회(B)의 기능을 통합수행하도록 조례로 규정	
유형4: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A)가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B)의 기능을 통합수행하도록 조례로 규정	가능

*윤강욱(2017), 지방위원회의 설치 및 통합운영에 관한 연구, 법제 12월호, 법제처.

- 특히 마포구민의 대의기구인 구의회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위원회 정비에 대해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보장하고 행정 과정에 다양한 민간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
 - 하지만 현행 위원회 정비 과정에서 대한 지방의회에 대한 협의나 보고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례 제정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구의회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사례도 존재함(특히 조례상 위원회를 별다른 근거없이 미설치 함으로써 입법권을 제한하는 경우)
 -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위원회 법’의 경우에는 위원회 정비에 대한 국회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대의기구의 통제를 명시화한 것과 대비됨. 특히 마포구의회의 경우에는 2019년 별도의 ‘위원회 회의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를 보이고 있기도 함
- 이에 상반기에 진행된 <마포구 지방위원회 현황분석> 1차 연구에서 제시된 현행 위원회 정비 실적 및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마포구의 위원회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위원회 정비가 명확한 원칙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조례 제정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됨
 - 특히 위원회의 운영이 행정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고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를 둘러싼 포괄적인 운영 규정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차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마포구의 지방위원회 전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고 폐지와 통합 만이 아니라 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정비 방향을 새롭게 제안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5. 과업 범위

1)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마포구

2) 시간적 범위 : 2024년(실적이 없을 경우 2023년 운영현황)

3) 내용적 범위 : 마포구 소관 지방위원회

○ (법령상 위원회)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 (조례 및 규칙상 위원회)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및 자체 규칙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4) 과업의 주요 내용

○ 마포구 내 지방위원회 전수조사: 운영현황 및 평가, 개선 방안

○ 마포구 내 지방위원회 정비 기준 제안

○ 마포구 내 지방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안 제시

5) 연구 방법

○ 법률 및 행정 자료 분석

○ 위원회 운영 사례 조사

□ 연구용역 결과 요약

○ 연구 결과(내용 요약) - 개선 방향 제시를 위한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 정량적 측면

(현황 1) 마포구의 경우 122개 위원회 중 상설 위원회의 수는 109개로 전체 위원회의 8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과 비교하여 비상설 위원회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남

(현황 2)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위원회의 34.1%(989개)가 의무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정성적 측면

(현황 1) 구정의 중요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 법령 및 조례에 위원회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운영되지 않는 경우 있음

(현황 2) 같은 강행 설치 위원회 규정 중 “두어야 한다”와 “둔다”라고 다르게 표기하여 혼란을 주는 부분이 있음

▶ 위원회 설치 근거와 관련하여 “둔다”라는 표현이 주는 혼란을 주는 것은 해당 조문이 임의 설치로 규정되거나 미분류, 설치되지 않은 위원회의 설치 근거에도 다수 나타남

- 개선 방향

(방향 1) 통합 및 폐지 기준의 명확화: 적정성 판단 필요

(방향 2) 정책자문위원회의 활성화

(방향 3) 위원회 설치 기준 및 조문 정비

(방향 4)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 총 사용금액: 금1,884,200원

편성액	금3,500,000원	
집행액	금1,884,200원	
잔액	금1,615,800원	
집행내역	자료수집 및 조사비	해당 없음
	회의 및 세미나 등 개최비	금1,380,200원
	전문가(강사료) 활동 경비	금504,000원
	기 타	해당 없음

○ 연구활동비 세부 내역

연번	단체별 지출 내역	지출금액(원)
1	주민 구정참여 활성화 연구회 1차 간담회	185,000원
2	제1차 연구 중간보고회	316,000원
3	성동구 선진사례 탐방(강사료 및 간담회)	824,000원
4	제1차 연구 최종보고회	293,500원
5	제2차 연구 중간보고회	200,900원
6	제2차 연구 최종보고회	64,800원

○ 예산과목: 구의회사무국, 선진의회상 정립, 의정활동 지원, 의정공동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6조

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

○ 사용금액: 44,000,000원(연구용역 2회 계약, 수의계약)

○ 예산과목: 구의회사무국, 선진의회상 정립, 의정활동 지원, 의정공동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의회비, 정책개발비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6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